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전문공보담당자 검사 김성진 전화 043-740-4309	보 도 자 료 2022. 10. 28.(금)

제 목	「16년간 발달장애인을 착취한 김치공장 운영자」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
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(지청장 박윤희)은 2022. 10. 27.(목) **16년간 발달장애인(중증의 지적장애인)을 학대하면서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민연금 수급액을 횡령한 공장 운영자를 준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**하였음
-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, 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, 의료비 지원 등 **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**하였음
- 앞으로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**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 진행 및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음**

Ⅰ 피고인 및 피해자

- 피고인 : A○○ (70세, 김치공장 운영)
- 피해자 : B○○ (65세) ※ 중증의 지적장애인

Ⅱ 공소사실 요지

- ’05. 3. ~ ’21. 9. 발달장애인인 피해자를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고도 임금 합계 2억 1,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**[준사기]**
- ’21. 9. 퇴직한 피해자의 ‘18. 10. ~ ‘21. 9. 임금 9,000만 원 상당, 퇴직금 3,000만 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**[근로기준법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**

  ※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등 고려하여 기소 가능한 부분만 기소
- ’17. 3. ~ ’20. 9.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국민연금 수급액 1,600만 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**[횡령]**
- ’21. 4. ~ 7. 장애인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**[장애인복지법위반]**

Ⅲ 수사 경과

- ’22. 5. 6. 특사경(대전노동청 청주지청),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송치
- ’22. 5. 10. 사경(영동경찰서), 준사기 등 사건 송치
- ’22. 5. ~ 10. 검찰, 피의자 조사 및 전문 상담사를 통한 피해자 면담 등 수사
- ’22. 10. 20. 검찰, 피의자 구속(검사 구속영장 직접 청구)
- ’22. 10. 27. 구속 기소

Ⅳ 의의 및 향후 계획

- **전문 상담사를 통한 피해자 면담으로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수사에 반영**하고,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, 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, 의료비 지원 등 **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**하였음
- 검찰은 향후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,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**발달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되는 수사절차 진행** 및 **실질적인 피해자지원**이 이루어지도록 **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**할 예정임